

# 카드뉴스 vol.5

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 
쉽고! 편리하게! 전달해 드려요.



## 국가연구개발사업 '회의비와 초과근무 식대'에 대하여 알아볼게요.

구분	계상 및 부당집행 기준	증빙 제출서류								
회의비	<p><b>[계상기준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회의비 기준금액 1인당 3만원 이내</li></ul></li></ul> <p>*지원기관 사업별 지침에 의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준용 (집행담당자에게 확인)</p> <p><b>[부당집행 기준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</li><li>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</li><li>출장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식대가 포함된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불인정</li></ul>	<p>① 카드매출전표 (생략 가능)</p> <p>② 회의록</p> <p>③ 참석자 서명부 (50만원 이상 건만 제출)</p>								
초과근무식대	<p><b>[부처별 외부참석자 관련 특이사항]</b>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지원기관</th><th>과제 참여연구원인 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정 여부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</td><td>인정</td></tr><tr><td>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분야</td><td>인정(외부참석자 없어도 인정)</td></tr><tr><td>해양수산부, 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식품기술평가원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분야</td><td>불인정</td></tr></tbody></table> <p><b>[계상기준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초과근무 식대 기준금액 1인당 1만원 이내</li></ul></li><li>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와 관련한 초과 근무 시에 집행 가능</li></ul> <p><b>[부당집행 기준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평일 점심 식대는 초과근무 식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 불가</li></ul>	지원기관	과제 참여연구원인 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정 여부	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	인정	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분야	인정(외부참석자 없어도 인정)	해양수산부, 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식품기술평가원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분야	불인정	<p>① 카드매출전표 (생략 가능)</p> <p>② 초과근무 대장 사본 * 근무자 직접 서명 필수</p>
지원기관	과제 참여연구원인 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정 여부									
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	인정									
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분야	인정(외부참석자 없어도 인정)									
해양수산부, 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식품기술평가원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분야	불인정									



## 그럼, '회의비와 초과근무 식대'와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을 알아볼까요?



### Q.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도 인정이 되나요?

A.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영수증은 전액이 불인정되오니,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Q. 출장비 중 식대와 회의비가 중복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A. 출장비 청구 시 회의비와 중복된 식대(1식 당 식비 기준단가의 1/3)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출장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시) 1일 식비 기준단가 25,000원인 경우

$$1식 감액 금액 : 25,000원 \times (1/3) = 8,340원 공제$$

### Q. 회의 후 1차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연장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 커피숍 비용은 처리가 가능한가요?

A. 회의 1건에 대한 식사 후 후식성 경비(커피, 차, 아이스크림 등)는 불인정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회의 개최에 따른 음료 및 다과비 필요 시 회의 식대를 포함하여 3만원 이내에서 회의 이전에 구입한 경우 인정

### Q. 상호가 ○○호프, ○○막걸리인 곳에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?

A. 위와 같이 상호에서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곳에서 사용한 회의비는 정산 시 결재시간 및 업체에 거래내역 확인을 통하여 불인정 될 수 있사오니, 회의비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Q. 연구비 사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다고요?

A. 사업별 집행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담당자 확인 : 연구정보시스템 > 연구과제현황 > 집행담당자 성명 및 전화